

제11호

행정명령

뉴욕주 비상 사태 선포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은 2020년 초부터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2020년 1월 31일,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 의료 커뮤니티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미국 전역에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선포 했기 때문에,

뉴욕은 현재 2020년 4월 이후 국가가 보지 못한 속도로 코로나19 전염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 코로나19 병원 신규 입원의 비율이 증가하여 하루에 300명 이상의 신규 입원의 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주 정부는 주 전체의 병원 수용력이 지역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정된 접근법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 및 테스트를 용이하게 하고 시행하며 바이러스가 이러한 속도로 계속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각 시군에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본인 Kathy Hochul 뉴욕주 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행정부법 제28조 제2-B항과 관련하여 본인에게 부여받은 권한에 의거, 지역의 지방정부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재난 사태가 뉴욕주에 발생했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본인은 2022년 1월 15일까지 뉴욕주 전역에 비상 사태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본 선언문은 주가 필수적이지 않은 선택 절차의 연기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지 및 플렉스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뉴욕 주 법령, 규칙 및 규정 제360부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행정부법 제29조 제2-B항에 따라, 본인은 공공 보건, 복지, 안전 보호가 필요해짐에 따라 뉴욕주 종합 비상 운영 계획(State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의 시행을 명령하고, 모든 주정부 기관에 이러한 주 비상 사태를 관리, 예방, 대응, 회복하기 위해 지방 정부 및 개인을 지원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주정부 및 지방 정부의 자산을 보호하며 기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합니다.

추가로, 주 비상시 법률, 지역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법률, 지역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를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하기 위해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 법률을 본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일부 2021년 12월 26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합니다.

- 주 계약에 추가 작업, 부지, 자금, 시간을 추가하거나 계약을 수주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3조에 따른 주정부 운영의 재배치 및 지원을 위한 계약 또는 임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재정법 제112조, 공공건물법; 또는 공공 건물법 제9조 따른 계약; 또는 주 재정법 제136-a조에 따른 전문 서비스 계약 또는 연방 GSA 일정, 연방 1122 프로그램 또는 기타 주, 지역, 지방, 다중 관할 또는 협력 계약 차량을 통한 상품, 서비스 및 기술 구매 계약,
- 필요한 상품, 용역, 기술 및 자재를 표준 고지 및 조달 프로세스를 준수하지 않고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까지, 주 재정법 조항 163 및 경제개발법 조항 4-C.
- 주 재정법(State Finance Law) 97-G장: 재난 위기에 대응 및 복구함에 있어서 음식물, 물자, 서비스, 장비의 구매, 또는 영향을 받은 지방 정부, 개인, 기타 민간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중앙화된 서비스를 공급 또는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이것은 Albany 시에서의 본인의 권한과 뉴욕주의

Privy Seal에 따라 2021년 11월 26일

상기와 같이 지정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